

民法分科討議

司會 朴秉濠*

分科討議에 들어가자 司會者 朴秉濠 教授는 公害·環境權의 問題, 行政法學과 關聯하여 土地所有權 등의 私權의 制限 및 그 特質의 問題, 그리고 家族法改正과 관련된 問題點 등을 提起하시면서 討議를 進行시켰다.

먼저 建國大 曹圭甲 教授는, 우리 民法學이 종래 實定法 體系의 論理的 解釋에 그치는 概念法學的 立場을 벗어나 韓國法的인 法社會學的 方法論으로 發展하고 있는 點을 환영하면서, 文化속에서의 法學的 社會的 機能을 強調하였다.

다음으로 金斗鉉 辯護士는 不動產登記의 不實과 그 改善方案에 關하여 代理人을 통한 印鑑改印事實의 通知라는 方法은 이미 不實된 登記自體를 是正하는 方法으로서는 不足하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公證에 의한 不動產登記方案을 提案하였다. 물론 公證은 大都市에서만 活用되고 있다는 現實의 與件이 問題되나 이는 가령 一定額以上の 去來額에 대해서만 公證制度를 活用한다는 등의 便法으로 補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具體的인 研究를 促求하였다. 아울러 유럽大學들에 있어서 公證職을 專攻하는 科(Notaria)가 있음을 指摘하면서 이러한 制度들에 關한 研究도 併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서울大 郭潤直 教授는 지금 法院에서 行하고 있는 登記의 카드化作業에 言及하면서, 카드化過程에서 登記用紙의 마지막의 有效한 部分만이 옮겨지고 있어 결국 두권의 登記簿가 된다는 등의 많은 難題가 있는데 이런 問題들은 미리 많은 사람들과의 商의가 必要한 일이란 點을 指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심포지움 등의 모임을 위해서 미리 다음의 討議課題 등을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을 내었다.

그 밖에도 民法制定 20년에 즈음하여 民法全體에 걸친 相互矛盾部分의 改正이나 時代에 뒤진 條項의 修正 등의 作業이 必要하다는 點 등이 提起되었다.

延世大 李根植 教授는 家族法改正作業에 關하여 언급하면서 좀더 韓國實情을 감안하여 各界各層의 充分한 檢討를 통해서 草案이 作成되었어야 할 것이며, 國會法司委에서의 전격적 改正으로 인한 拙速性 등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